

금융지원

금융

기술보증기금

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의 기술을 심사하여 기술보증서를 통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

신청시기 : 연중수시 지원대상 : 중소기업

전담기관 : 기술보증기금

■ 지원대상

-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
-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
- 산업기술연구조합
 - ※ 상기대상기업중 "은행업감독규정"에 의한 주채무계열 소속기업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보증대상에서 제외
 - ※ 다만, 기업 구매자금대출, 기업구매전용카드대출 및 무역금융에 대한 보증에 대하여는 상위 30대 계열기업군 소속기업만 제외

신기술사업

- 제품개발 및 공정개발을 위한 연구사업
- 연구개발의 성과를 기업화, 제품화하는 사업
- 기술도입 및 도입기술의 소화 개량사업
- 다른법령에서 규정된 기술개발사업
- 기타 생산성향상, 품질향상, 제조원가절감, 에너지절약 등 현저한 경제적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 또는 응용하여 기업화, 제품화하는 사업
- ※ 업종별 제한은 없으나, 제조, IT, 연구 및 개발, 기술 서비스업종 등이 주로 해당되며, 여타업종 영위기업도 상기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보증대상임.

■ 지원규모

■ 창업·준비기업

보증상품	지원대상	주요내용
예비창업자사전보증	• 일반창업 (우수기술·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) - 최근 2년 이내 등록(출원포함)된 특허권·실용신안권(전용실시권 포함) 사업화 예정인 자 - 기금에서 따로 정한 혁신성장산업을 사업화하려는 자 - 지식문화, 이공계출연자, 기술경력·뿌리창업, 첨단·성장연계 창업 예정인 자 - 정부·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 등에서 주관하는 창업교실, 창직·창업인턴 수료 및 창업경진대회 입상자, 예비창업자 지원사업(시제품 제작지원 등)에 선정된 자, 창조경제타운 추천 우수아이디어 사업화 주체 등 • 전문가창업 (교수, 연구원, 기술사, 기능장 및 특급기술자) - 교수: 고등교육법 제14조(교직원의 구분)제2항에 의한 교원(교수, 부교수, 조교수) - 연구원: 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조(정의)제6호에 의한 '공공연구기관'에서 근무한 연구원 - 기술사 및 기능장: 「국가기술자격법」 제9조(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응시자격)에 의한 기술사 및 기능장 - 전공, 해당기술 분야 종사기간 등을 고려 시 '특급기술자'로 판단되는 자	• 보증비율: 100%(전액보증) • 보증료감면: 0.7%p
청년창업기업우대프로그램	• 경영주 만 17~39세 이하인 창업 후 5년 이내 기술창업기업	• 창업초기 소요되는 운전자금(창업자금 등) 및 시설자금(사업장 임차자금 등) • 보증료: 연0.3% 고정요율 적용 • 부분보증비율: 95% 적용

보증상품	지원대상	주요내용
맞춤형 창업성장 프로그램	- 창업 후 7년 이내 맞춤형 창업성장분야 해당기업 <맞춤형 창업성장 분야> - 지식문화, 이공계챌린저, 기술경력·뿌리창업, 첨단·성장연계 창업	- 창업초기 소요되는 운전자금, 사업장 임차자금 및 시설자금 - 보증비율: 90%(창업 후 1년 이내 100%, 5년 이내 95%) - 보증료 - 창업 후 3년 이내: 0.4%p 감면 (1억원까지 1.0% 고정보증료율) - 창업 후 7년 이내: 0.3%p 감면 (1억원까지 1.0% 고정보증료율)
마이스터 기술창업 보증	- 경영주가 산정기술 분야 5년 이상의 대·중견기업 기술경력(연구기술 또는 기술 생산 분야) 보유 중이거나, 대·중견기업 스피노프 창업기업으로 우수기술(예비)창업기업 추천 받은 기업 중 아래 해당기업 - 대·중견기업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자로 창업예정인 예비창업자 - 창업기업으로 실제경영자가 대·중견기업 퇴직한 자인 기업	- 보증비율: 90%(창업 후 1년내 100%) - 보증료: 0.7%p 감면(1억원까지 1.0% 고정 보증료율) - 스피노프(Spin-off) 창업기업의 경우 사전한도 부여가능 - 보증연계투자 지원 대상기업으로 우선 추천 - 기술 경영컨설팅 지원 등
우수기술 사업화 지원	-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(U-TECH밸리) 대학의 이공계 (의대포함) 교수, 석·박사 연구원이 창업한 기업 또는 (R-TECH밸리) 연구기관의 이공계 석·박사 연구원이 창업한 기업 또는 (M-TECH밸리) 퇴직후 2년내인 자로 협약 대기업 연구소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이공계 석·박사 연구원이 창업한 기업	- 보증비율: 90%(창업 후 1년내 100%) - 고정보증료: 0.5% - 기술평가료 면제 - 투자지원: 보증연계투자 우선추천 및 이노비즈기업 선정평가 우선진행 - 상장지원: 컨설팅지원, 기술이전 등 - 전담코칭, 홍보지원 등
원클릭 보증	신보,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잔액이 없는 기업	- 운전자금 - 건별 보증금액 최대 1억원, 같은 기업당 최대 3억원 - 보증료율 0.3%p 감면

■ 도약·성장기업

보증상품	지원대상	주요내용
Kibo-Star 벤처기업 보증	창업후 12년내 벤처·이노비즈기업 및 혁신성장산업 영위기업으로 기술력 우수기업	- 보증비율: 95% - 증료율 0.5%p 감면 - 투자지원, 이노비즈기업 선정, 상차지원 등
기업인수보증	기업 인수·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	기업인수 이후 수반되는 기술개발, 설비도입, 사업화자금을 일괄 지원
수출기업 지원	- 수출예상기업: 수출실적이 당기매출액 등의 10%미만인 기술혁신선도형기업 - 수출실적기업: 수출실적이 당기매출액 등의 10%이상인 기술혁신선도형기업 - 수출주력기업: 수출실적이 당기매출액 등의 30% 이상인 기술혁신선도형기업/수출실적이 1백만불 이상인 기술혁신선도형기업 - 수출선정기업: 수출예상·실적·주력 기업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[수출바우처 사업 선정, 신규수출 기업화사업 선정, K-Global 300 선정][브랜드K제품 선정, 글로벌 강소기업]	- 보증비율우대 (90%~95%) - 보증료율 감면(0.2~0.4%p) - 신용도 검토항목 심사 완화 및 전결 완화 등
유동화회사보증	- 중소기업: 기술사업평가등급 BB이상 - 중견기업: 기술사업평가등급 BB이상 & 신용평가회사 회사채평가등급 BB-이상	- 중소기업: 최대 150억원 - 중견기업: 최대 250억원

■ R&D·IP·기후금융

보증상품	지원대상	주요내용
R&D보증	• 개발단계 보증대상기업 중 개발 중인 과제에 대하여 R&D 개발자금 지원 적정성이 인정되는 기업 • 사업화단계 보증대상기업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에 대하여 R&D 사업화자금 지원 적정성이 인정되는 기업 - 개발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의 기업자체 R&D 과제 - 최근 3년 이내 개발성공 판정을 받은 정부출연 R&D 과제 - 최근 3년 이내 기술이전을 받은 공공연이전 R&D 과제	• 개발단계 연구개발자금(연구개발과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직·간접적으로 소요되는 자금) 및 개발완성자금(디자인, 시제품 제작 등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소요되는 자금) • 사업화단계 R&D 성공과제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운전 및 시설자금 • 보증비율: 개발단계(95~100%), 사업화단계(85~95%) 이내 부분보증 • 보증료 우대: 0.3%p 감면
지식재산(IP) 평가보증	• 특허권, 저작권 등 인간 창조활동으로 만들어낸 무형자산으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지식재산 ※ 산업재산권(특허권, 실용신안권, 디자인권, 상표권), 저작권(저작권, 저작인접권), 신지식재산권(산업저작권, 첨단산업재산권, 정보재산권, 신상표권) 등	• 부분보증 비율: 90%~95% • 보증료감면: 0.3%~0.5%
기후기술보증	• 기후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 중인 중소기업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B 이상인 기업 ※ 기후기술: '온실가스 감축기술'과 '기후변화 적응기술'로서, 기보가 따로 정한 '기후기술판별표'를 충족하는 기술	• 보증료감면: 0.2%
신재생에너지보증	•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확인·추천한 신재생에너지 분야 ①발전사업 영위 기업(발전기업) 또는 ②관련 기술 보유·품목 생산 기업(산업기업)에 대해 보증 지원	• 보증료: 발전기업의 경우 고정보증료율 0.5% 적용, 산업기업의 경우 기술평가 등급별 기준보증료율에서 0.2%p 차감 우대지원 • 보증비율: 기업유형, 자금종류(운전/시설자금), 심사결과 등에 따라 95%~100%로 차등 운용 • 지원한도: 기존 운전자금 사정 한도금액에 탄소기차평가금액을 가산하여 추가 한도 지원

■ 일자리·혁신성장지원

보증상품	지원대상	주요내용
일자리창출 지원(굿잡보증)	• 일자리 창출기업으로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- 과거 1년전 대비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및 20% 이상 증가 - 최근 1년 이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, 경력단절여성 재고용, 장애인,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 졸업자 고용, 일자리안정자금 수혜 -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유지 등	• 보증비율: 90~95% • 보증료감면: 0.3~0.4%p
4차산업혁명 지원 프로그램	• 제4차 산업혁명관련 산업 영위기업 - 핵심기업: 기술사업평가등급 BBB이상 또는 정부추진 6대 핵심분야(데이터, 네트워크, 인공지능, 시스템반도체, 바이오헬스, 미래차) - 일반기업: 기술사업평가등급 B이상	• 보증비율: 핵심기업 95%, 일반기업 90% • 보증료감면: 핵심기업 0.3%p, 일반기업 0.2%p
스마트공장 지원프로그램	•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에 참여 및 공급기업(예정포함) - 도입기업: 정부 등의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, 스마트공장구축확인 기업 등 - 공급기업: 정부 등의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, 정부의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인정기업 등	• 도입기업 우대보증 - 보증비율: 90~100% - 보증료: 0.3~0.5%p 감면 또는 고정보증료 0.5~0.7% • 공급기업 우대보증 - 보증비율: 90% - 보증료감면: 0.3%p • 특별출연 협약보증(우리은행,) - 보증비율: 95% - 보증료감면: 0.2%p • 특별출연 협약보증(나공사*) - 보증비율: 100% - 보증료감면: 0.2%p *경남테크노파크 추천기업 대상 • 보증료지원 - 협약보증(우리, 기업은행) -보증료지원(은행): 0.2%p, -보증료감면(기보): 0.2%p • 보증료지원 - 협약보증(농협, 경남은행*) -보증료지원(은행): 0.4%p, -보증료감면(기보): 0.2%p -금리보전(경상남도): 2.0%p *경남테크노파크 추천기업 대상

■ 협약·상생·문화 보증 프로그램

보증상품	지원대상	주요내용
신재생에너지 상생협약보증	신재생에너지 분야 제조활동 또는 발전사업을 영위하거나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하는 중소기업으로 상생협약보증 관련 추천위원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중소기업	- 보증비율: 90%, - 보증료감면: 0.3%p
유관기관 협약지원 (금융기관 협약 우대보증)	- 혁신성장산업 영위기업 - 신성장산업 영위기업 - 청년창업기업 - 일자리창출기업 - 기술력 우수기업 등	- 보증비율 우대 - 보증료 감면: 0.2%p(5년간) - 협약은행: 기업, 국민, 우리, 신한, 하나은행 등
유관기관 협약지원 (INNO-BIZ 금융지원 협약보증)	INNO-BIZ 기업	- 보증비율: 100%, 금리우대 - 협약은행: 산업, 기업, 우리, 하나, 외환, 신한, 국민, 부산, 경남, 대구, 한국씨티, SC, 전북, 농협, 광주은행
대·중소기업 상생협약보증	대기업 추천 협력기업	- 자금용도: 운전 및 시설자금 - 보증비율: 신규 취급 시 100% - 보증료감면: 0.3%p
중견·중소기업 상생 파트너십 협약보증	중견기업 추천 협력기업	- 자금용도: 운전 및 시설자금 - 보증료감면: 0.2%p(5년), 보증료 지원: 0.4%p(3년) - 금리 우대: 대출금리 최소 0.5%p 감면
정책자금 One-Stop 지원	- 정보통신진흥기금 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 (과학기술정보통신부) - S/W, 컴퓨팅, 차세대통신네트워크, 정보통신미디어, 전자정보디바이스 등 IT 및 IT기반 융합분야 기술개발기업 - 중소·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자금 (지방자치단체) - 벤처기업, 기술창업기업 등 지자체가 요청한 기업	1회의 심사만으로 지원대상기업의 선정 및 보증지원 가능금액을 결정 - 자금관리주체 및 위탁관리기관에서는 기금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별도 심사절차없이 정책자금 지원

■ 신청방법

- (신청시기) 연중수시
-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내 디지털지점 (www.kibo.or.kr)에서 온라인 신청

■ 문의처

-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(kibo.or.kr)
-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(☎ 1544-1120)